

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

검 토 보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윤 목

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계획안은 2016년 9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□ 출연목적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
- ※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

□ 출연 예정금액 : 118,009천원(도비 100%)

-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
- 산출근거 :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
- '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86,730,482천원 × 1.5/10,000 = 118,009천원

□ 출연계획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천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102,186	102,186	0	118,009	15,823

4. 검토의견

- 이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보다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이나 학술 행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도록 충청북도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붙임: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. 끝.